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
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기대, 김재형,
김정태, 김제리, 김창원,
김태수, 김화숙, 김희걸,
노식래, 문병훈, 박기열,
박기재, 박순규, 오현정,
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2012000000016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이성배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1.20

회신일 : 2022.01.20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○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≍ 250,000천원
= 연 50,000천원 x 5년

※ 2022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5
e-mail : kjh0123@seoul.go.kr